

인천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2772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2. 2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소외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A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제3항에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하였지만, 피고들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각 지분의 총합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22. 2.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 자녀들인 D과 피고들이 있다. F의 법정상속분은 11분의 3, D과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1분의 2이다.

다.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2.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11,464분의 1,024.79 지분을, 피고 A가 11,464분의 1,180.06 지분을, 피고 C가 11,464분의 661.15 지분을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가 전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2022. 8. 29. 및 2022. 8. 16.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원고에 대하여 14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합계 63,657,3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63,657,350원 상당의 조세채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은 2/11지분임에도, D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판분할협의를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D에게,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3 지분(= D의 2/11 지분 ÷ 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영